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76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김용만・임광현・임미애

이훈기 · 서영교 · 이수진

최민희 • 조인철 • 박홍배

김용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훼손)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 및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물론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내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 •확산시킬 우려가 있음.

더구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해당 역사를 지우기를 위한 목적으로 해외의 소녕상 건립 방해와 이미 세워져 있는 소녀상 철거에 외교력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의 건립·보존과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위한 지원 조치를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6호·제7호 신설 및 제16조 신설).

법률 제 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이나 상징물(이하 "조형물등"이라 한다) 건립 및 보존사업
- 7. 조형물등을 해외에 건립하거나 해외에 건립된 조형물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허위의 사실 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 게시 또는 상영

-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강의,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
-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 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③ 조형물등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수행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
	하기 위한 조형물이나 상징물
	(이하 "조형물등"이라 한다)
	건립 및 보존사업
<u><신 설></u>	7. 조형물등을 해외에 건립하거
	나 해외에 건립된 조형물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
<u>6.</u> (생 략)	<u>8.</u>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6조(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허
	위사실 유포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u>
	<u>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u>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 용

-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강의,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③ 조형물등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천한다.